



수 신: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291길 47-7 501호 (장기동)  
만물상점(DAYZ LAB.)(대표자: 전영순)


발 신: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38, 307호(중림동, 센트럴타워)  
특허법인올림 (대표변리사 장현욱, 이병준님의 대리인)  
전화: 010-3038-8780  
E-mail: [hwjang@olimpat.co.kr](mailto:hwjang@olimpat.co.kr)

제 목: 디자인권 30-1213074 권 침해에 따른 사용 중단 요청 및 경고의 건

1. 당 법인은 "이병준"님(이하, '디자인권자'라고 함)을 대리하여, 수신인의 지식재산권 침해행위에 대한 디자인권자의 입장을 엄중하게 통보하기 위해 본 서신을 귀사에 송부합니다.
2. 디자인권자는 2020년부터 스포츠/레저용품, 생활용품, 의류용품, 가전용품 등의 다양한 제품 등을 제작 및 온라인/오프라인을 통해 판매해오고 있으며, 독특한 아이디어와 창의적인 디자인을 통해 다양한 제품을 출시 및 판매하여 제품마다 높은 판매량을 기록하는 등 디자인권자만의 제품을 대중화시키며 관련 업계에서의 주목과 함께 제품의 개발 및 영업 활동을 지속해오고 있습니다.

이 우편물은 2023-10-05  
제 3126001100760호에 의하여  
내용증명우편물로 발송하였음을 증명함  
서울회현동우편취급국장

3. 디자인권자는 제품 등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확보하며 법적 보호 아래에 있고 자 노력하고 있는데, 그 중 하나로 디자인권자의 제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디자인 등록을 받은 바 있습니다.(아래 표 참조)

No.	디자인 물품	디자인 도면	출원번호 (출원일)	등록번호 (등록일)
1	힙색		30-2023-0010719 (2023.03.22)	<b>30-1213074</b> (2023.04.19)

4. 상기 표와 같이, 디자인권자는 <힙색> 물품에 대한 위 디자인에 대하여 2023. 03. 22. 자에 디자인출원(출원번호 제30-2023-0010719호)하였고, 2023.04.19. 자에 설정등록을 하여 현재까지 적법하고 유효하게 디자인권(등록번호 제30-1213074호)을 보유(이하, 등록디자인)하고 있습니다 (별지 1 참조).

5. 그러나, 디자인권자의 위와 같은 권리 보호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귀하께서는 DAYZ LAB.(<https://smartstore.naver.com/dayzlab>)이라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디자인권자의 등록디자인을 그대로 모방한 ‘런프리 러닝벨트 런닝가방 플립벨트’(이하, ‘침해디자인’이라고 함) 제품을 홍보 및 판매하고 있음을 디자인권자는 발견하였습니다.



<p>등록디자인</p>	<p>침해디자인</p>
	
<p>등록디자인</p>	<p>침해디자인</p>
	
<p>등록디자인</p>	<p>침해디자인</p>
	

6. 귀하께서 홍보 및 판매하는 침해디자인은, ① 전체적으로 허리에 둘러 착용할 수 있는 형상의 물품이라는 점, ② 전면부에는 서로 길이가 다른 2개의 지퍼형 주머니가 형성되어 있다는 점, ③ 2개의 지퍼 테두리에는 어두운 곳에서 불빛을 반사시켜 어둠 속에서 노출시키기 위한 반사부가 타원형으로 형성되어 있다는 점, ④ 지퍼형 주머니 외에 별도의 보관부가 일측에 추가적으로 형성되어 있다는 점, ⑤ 허리에 두른 뒤 규정시킬 수 있도록 벨크로가 일측 끝단에 형성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귀하의 침해디자인은 디자인권자의 등록디자인에 대한 요지 내지 특징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바, 양 디자인은 서로 동일



하거나 극히 유사한 미감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7. 따라서, 디자인권자가 특허청으로부터 적법하게 디자인등록을 받은 등록디자인을, 귀하께서 아무런 노력 없이 모방하여 침해디자인을 생산하는 행위 및 이를 홍보, 사용, 판매하는 행위는 엄연히 불법이며, 이러한 행위들은 모두 디자인권자의 등록디자인을 명백히 침해한 것입니다.
  
8. 또한, 귀하의 등록디자인에 대한 침해 행위는, 디자인보호법 제115조(디자인권자는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자기의 디자인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에 의하여 자기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에 따라 디자인권자가 손해배상청구 등을 할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하여 디자인권자의 손해를 모두 배상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디자인보호법 제220조(침해죄)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중형이 내려질 수도 있는 행위임을 명백히 통보하는 바입니다.
  
9. 더욱이 디자인보호법 제116조(과실의 추정)에 따라 타인의 디자인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귀하께서 침해디자인을 홍보, 사용, 판매하는 행위는, 등록디자인에 대한 침해에 대하여 귀하의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10. 위의 내용에 비추어, 귀하께서는 디자인권자의 등록디자인을 침해하고 있는

것이 명백하며, 귀하께서 현재까지 침해하고 있는 이 건 등록디자인은 디자인권자가 많은 노력과 비용을 통해 확보한 소중한 지식재산인 바 이는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어야 함이 명백하므로, 디자인권자는 귀하로 하여금 다음과 같은 사항의 이행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행 요청사항>

- ① 침해디자인과 관련하여, 온라인 검색사이트(네이버, 다음 외 모든 검색사이트 포함)의 상품 검색 결과, 온라인 쇼핑사이트(네이버, 쿠팡 외 모든 쇼핑사이트 포함)의 상품 검색 결과 등을 포함한 일체의 온라인/오프라인상의 사용행위를 제거하고 이후에는 그 홍보, 판매, 사용행위를 중단할 것.
- ② 현재 보유하고 있는 침해디자인 제품(재고 포함)을 전량 폐기하고, 이후에는 홍보, 판매, 사용행위를 중단할 것.
- ③ 위 ①과 ②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예: 이 건 침해디자인과 관련된 상세페이지 등을 삭제한 온라인 쇼핑사이트 캡처화면, 침해디자인 제품을 폐기한 사진 등)를 발신인(특허법인올림)에게 우편 또는 메일로 전달할 것.
- ④ 향후 이 건 등록디자인을 포함하여 디자인권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서를 서면으로 정리하여 발신인(특허법인올림)에게 우편 또는 메일로 전달할 것.
- ⑤ 이 건 등록디자인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디자인권자의 업무상 손실(변리사 비용 포함)에 대한 손해 오십만원(500,000원)을 합의금으로 배상할 것.

11. 귀하께서는 본 경고장을 접수한 날로부터 2주 이내인 2023. 10. 19.까지 귀하의 입장을 서면으로 정리하여 발신인(특허법인올림)에게 우편 또는 메일로 명확히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요구사항 전부를 귀하께서 즉시 수용할 경우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겠지만, 그렇지 아닐 경우 디자인권자는 본 사안에 관하여 귀하께서 더 이상의 협의를 거절하는 것으로 간주할 것이며, 이 경우 추가적인 논의는 없을 것입니다.

12. 혹시라도 귀하께서 디자인권자의 디자인권을 고의로 침해한 것이 아니거나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한다면, 디자인권자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내용의 답변서를 상기 기간 내에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13. 아울러, 만약 귀하께서 본 경고장에 대해 위 요구사항을 묵살하거나 혹은 거절하는 부정적인 의사를 회신할 경우, 본 경고장은 귀하께서 디자인권자의 권리를 고의로 침해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유력한 증거자료로 활용될 것이며, 그에 따라 디자인권자는 법률에서 허용되는 모든 민·형사상 조치를 즉시 진행할 것임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후, 귀하의 이러한 부도덕한 행위가 법과 여론에 의해 철퇴를 맞도록 디자인권자와 당 법인은 모든 역량을 다할 것입니다.



14. 디자인권자는 귀하와의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법적 분쟁을 목적으로 하는 것

이 아니며, 동종업계에서 상생의 길을 걷는 동반자적 관계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 건에 대한 분쟁의 시비를 가리기보다는 유연하고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점에 기하여 본 서신을 보내드리는 것이니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길 바라며 현명한 판단과 결정을 기대합니다.

15. 본 경고장과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디자인권자의 대리인이자 본 경고장의 발신인(특허법인 올림)의 장현욱변리사에게 연락 주십시오.

2023. 10. 04.

디자인권자 이 병 준  
위 대리인 특허법인 올림 (인)



변리사 장 현 욱

- 별지 1: 디자인권자의 등록디자인(등록번호: 제30-1213074호) 디자인 등록원부  
별지 2: 디자인권자의 등록디자인(등록번호: 제30-1213074호) 디자인 등록공보



# 디자인등록원부

디자인 등록번호	제 1213074 호
----------	-------------

## [ 권 리 란 ]

표시번호	등 록 사 항			
1번	출원연월일	2023년 03월 22일	출원번호	2023-0010719
	공고연월일	2023년 04월 21일	공고번호	
	등록결정(심결)연월일	2023년 04월 05일	등록의구분	일 부 심 사
	디자인의수	기본디자인 1 건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일련번호	물품류	물 품
		M001	제03류	검색
	존속기간(예정)만료일	2043년 03월 22일		
2023년 04월 19일 등록				

## [ 등 록 료 란 ]

제 01 - 03 년분 (2023.04.19 ~ 2026.04.19) 금 액	22,500 원(개인감면)	2023년 04월 19일 납입
--	----------------	------------------

## [ 디 자 인 권 자 란 ]

순위번호	등 록 사 항
1번	(최종권리자) 이병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만리산로 11, 104동 2104호 (범천동, 서면 DS.협성 엘리시안 아파트)
	(등록권리자) 이병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만리산로 11, 104동 2104호 (범천동, 서면 DS.협성 엘리시안 아파트)
2023년 04월 19일 등록	

\* 법률 제7289호(2004.12.31)에 의거 2005년 7월 1일부터 의장을 디자인으로 변경 함

이하어백

1







(19) 대한민국특허청(KR)

(12) 등록디자인공보(S)

(45) 공고일자 2023년04월21일

(11) 등록번호 30-1213074

(24) 등록일자 2023년04월19일

(51) 국제분류 03-01  
(21) 출원번호 30-2023-0010719  
(22) 출원일자 2023년03월22일

(73) 디자인권자

이병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만리산로 11, 104동 2104호 (범천동, 서면 DS.협성 엘리시안 아파트)

(72) 창작자

이병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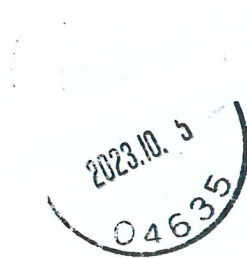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만리산로 11, 104동 2104호 (범천동, 서면 DS.협성 엘리시안 아파트)

(74) 대리인

특허법인테헤란

담당심사관 : 김은영

(54) 명칭 **힙색**



**디자인도면**

**물품류**

제3류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힙색

**디자인의 설명**

1. 재질은 금속 및 직물, 합성수지재임.
2. 본원 디자인은 [참고도면 1.1]에서와 같이, 내부에 물통 등의 스포츠용품을 넣고 허리에 둘러매는 데 사용되는 것임.
3. [도면 1.1]은 본원 디자인의 전체적인 형태를 표현한 도면대용 사진임.
4. [도면 1.2]는 본원 디자인의 정면에서 바라본 도면대용 사진임.
5. [도면 1.3]은 본원 디자인의 배면에서 바라본 도면대용 사진임.
6. [도면 1.4]는 본원 디자인의 좌측면에서 바라본 도면대용 사진임.
7. [도면 1.5]는 본원 디자인의 우측면에서 바라본 도면대용 사진임.
8. [도면 1.6]은 본원 디자인의 평면에서 바라본 도면대용 사진임.
9. [도면 1.7]은 본원 디자인의 저면에서 바라본 도면대용 사진임.
10. [참고도면 1.1]은 본원 디자인의 사용상태를 표현한 도면대용 사진임.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

본원 디자인 '힙색'의 형상과 모양의 결합을 디자인창작내용의 요점으로 함.



도면 1.1



도면 1.2





도면 1.3



도면 1.4



2023.10. 3  
04635

도면 1.7



참고도면1.1



0463